

하남소방서 영양사(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도 하남소방서 영양사(무기계약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21일

경기도 하남소방서장

1. 채용분야

- 채용분야 : 영양사
- 담당업무 : 급식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채용인원 : 1명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
※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자격조건	우대요건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 자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조리”의 자격증 소지자의 면허증 - 집단급식소 영양사 근무경력자 * 집단급식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 등의 1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응시결격사유

- 「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 및 제67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7조 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은 65세로 한다

○ 응시결격사유 추가기준(영양관리사, 조리사)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법 제40조(건강진단)】

-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3. 고용조건

○ 근무시작일 : 2022. 12. 5.(월) 예정

○ 근무시간 및 연봉

- 보 수 :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직군별 봉급표」에 의함

※ 각종 수당 별도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복지포인트 등

- 근무시간 : 주40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주5일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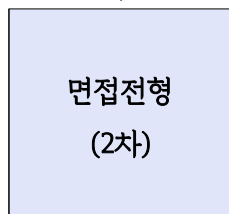
- 기타사항 : 업무상 필요한 경우 토/일/공휴일 근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 정년 만60세

분 야	근무예정부서	선발인원	담 당 업 무
영양사	하남소방서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76)	1명	급식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채용방법 및 일정

○ 전형절차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구술면접 진행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 동순위자 발생 시 관련 업무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결정

① 공무직으로서 정신자세 ② 업무지식 및 응용능력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22. 11. 21. 14:00 ~ 2022. 11. 29. 18:00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하남소방서 등 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2022. 11. 21. 14:00 ~ 2022. 11. 29. 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등기 우편 접수 및 전자우편(yuno0117@gg.go.kr)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 홈페이지 : https://apply.jobaba.net
서류심사	2022. 11. 30.	서류전형 결과 개별 통보
면접심사	2022. 12. 01. 14:00	- 일시 : 2022. 12. 01.(목) 14:00 - 장소 : 하남소방서 2층 소회의실 ※ 면접시작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합격자 발표	2022. 12. 02. 10:00	합격자 개별 통보
채용후보자 등록 및 근로계약서 체결	2022. 12. 02. ~	하남소방서 소방행정과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별 통보 예정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필수)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필수)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필수)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 (필수)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별지5호 서식)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원본, 병역사항 포함_남자에 한함)

- (필수) 영양사 면허증(사본) 1부
- (필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보건소, 병원 발급분)
- (해당자에 한함) 조리사 면허증(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원본) - 각 기관발급용 1부
 -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항목별 주의사항

【면허증 및 자격증】

- 면허증 및 자격증 인정 기준일자 : 원서접수 前 일
 - ※ 면허증 및 자격증은 채용후보자 등록까지 유효하여야 함(자격상실 등의 경우 합격취소)
-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발급신청일이 아닌 면허(자격)증 취득일 기준
- 폐지된 면허증 및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경력 인정 기준일자 : 공고일 前 일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사본 제출 시 불인정)
 - * 근무부서, 기간, 직급(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 * 영양사의 경우 집단급식소 해당유무를 반드시 작성 - (유) / (무)

○ 면접시험 당일 제출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필수) 신분증 지참 및 범죄경력 조회 등 확인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경과 시 제출서류 폐기**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분당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소방서 소방행정과 (☎031-799-4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봉급표

호봉	가직군
1호봉	2,167,860
2호봉	2,178,060
3호봉	2,185,670
4호봉	2,194,630
5호봉	2,203,190
6호봉	2,213,110
7호봉	2,223,070
8호봉	2,233,070
9호봉	2,243,120
10호봉	2,253,210
11호봉	2,262,460
12호봉	2,271,730
13호봉	2,281,050
14호봉	2,290,390
15호봉	2,298,630
16호봉	2,306,900
17호봉	2,315,220
18호봉	2,323,540
19호봉	2,331,910
20호봉	2,340,310
21호봉	2,347,810
22호봉	2,355,310
23호봉	2,362,850
24호봉	2,370,430
25호봉	2,378,010
26호봉	2,384,670
27호봉	2,391,330
28호봉	2,398,040
29호봉	2,402,610
30호봉	2,407,170
31호봉	2,411,740

[별지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무기계약근로자(영양사)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응시번호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응시직종	무기계약근로자(영양사)	
주 소		
전자우편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하남소방서장 귀하



응 시 표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종	조리사
성 명	(한글)	생년월일	
2022년 월 일 하 남 소 방 서 장 (직인)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하남소방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당일은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그 외 공란은 모두 작성
2.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합판 사진 부착
※ 사진파일로 칼라 프린트해도 무방(흑백 불가)

[별지2호 서식]

이 력 서

<필수항목>						
지원자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선택항목>						
경력사항 (조리사 경력)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관련 자격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특기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 등록번호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별지 3호]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영양사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20 . .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학교생활, 업무실적, 업무 경험 및 향후 업무수행 계획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공무원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임용 결정사유 확인 등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서류 보존기간 완료시까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공무원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임용 결정사유 확인 등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서류 보존기간 완료시까지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하남소방서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본인은 하남소방서에서 시행하는 2022년 무기계약근로자(조리사)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응시요건 해당사항 및 제출 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 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하남소방서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하남소방서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29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 (031-799-4219) 또는 이메일(yuno0117@g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1월 3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합격자발표일로부터 1개월)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하 남 소 방 서 장